

## 간접투자기구 수시공시
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, 동법시행령 제101조 및 제10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공시사유 : 신탁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
2. 자산운용회사: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(주)
3. 대상투자신탁 : 라자드 코리아 주식종류형 투자신탁
4. 변경내용 : “증권펀드 세제지원방안 추진(기획재정부·금융위원회 발표('08.10.19'))”에 따른 장기주식형펀드 세제혜택 방안 추가
5. 시 행 일 : 2008년 10월 20일
6. 기 타 : 자세한 변경사항은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(주)

---